

제281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최 광 호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71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8월 18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1건 】

-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조성부지 매입 . . . 2,487백만원
 - 위 치: 화곡동 369-41 (소요예산)
 - 사업규모: (매입) 토지 1필지 158.3㎡, (매입) 건물 1동 87.57㎡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5. 검토의견

-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치는 화곡동 369-41 번지이며
 -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임
 - 사업규모는 토지 158.3㎡와 건물 87.57㎡ (지하1층, 지상2층)이며
 - 소요예산은 총 24억 8,700만원으로 시비 100%임

6. 종합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¹⁾의 일환으로, 현재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1)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마을과 시장 간 '상생'을 목적으로 전통시장과 마을이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 경제, 사회, 문화를 개선하는 사업. 기존의 시장활성화 사업이 시장 내 공간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시장상인에 한정된 것에 비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재생의 중요 공적자산으로 활용해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동시에 추진함.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2년 상반기 실시 설계 후 서울시에서 사업비²⁾를 교부받아 앵커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 화곡1동은 거주자의 약 38%가 2~30대 청년 인구^[2021.07.31.기준]로 젊은 층의 유입이 늘면서 지역 내 잠재력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한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생활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요소도 많은 현실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이 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의 문화·여가 공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 마을관리소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건립사업³⁾과 연계 시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2021.2~3) 실시 결과, 총8,000백만원 규모(시비)로 지원 결정되어 연도별 성과평가 후 평가결과 충족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3)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건립사업

구 분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 SOC 시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내 용	토지, 건축물 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비 지원
예 산	1,900백만원(시비100%)	2,300백만원 (국비60%, 시비24%, 구비16%)
진행상황	화곡 1-2 공영주차장(9면) 공사완료 2021. 9. 1. 사용개시 예정	적정부지 검토 중

참고1

관련자료

□ 위치도 및 부지 전경



□ 주민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조성계획 기본 구상안

구분		세부기능	비고
4F	CRC지원공간	- 공유오피스	33㎡
3F	작은도서관	- 도서대여실 및 독서공간 - 동아리방(교육/토론크방)	94㎡
2F	마을극장	- 영화관람실 - 미니 전시·공연장	94㎡
1F	커뮤니티 공간	- 육아나눔터, 병과후 돌봄공간 - 마을부엌(공유주방) 등	94㎡
B1F	마을작업실	- 공동 작업장 및 공유대여소 - 다목적공간	100㎡

			
[돌봄공간]	[마을부엌(공유주방)]	[마을극장]	[작은 도서관]

※ 향후 부지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